職印省略



(http://www.kicpa.or.kr)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 전화 (02)3149-0256 / 전송 (02)3149-0269 기획팀 담 당 : 김 대 규 plan@kicpa.or.kr

문서번호 : 기획 제2011-1516호

시행일자 : 2011. 12. 21

수 신: 회계법인 대표이사, 개업회원

참 조:

제 목: 기업진단업무의 독립성 준수 안내

1. 귀 감사인(회원)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공인회계사법」제21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행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해당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공정시장과-2957, 2011.12.14)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회사에 대하여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감사인(회원)께서는 「공인회계사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공인회계사회장